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업무방해



[수원지방법원 2010. 2. 17. 2009고합422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안종오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육대웅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